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약관

# 목 차

##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2조(보험금의 분담)

제13조(현물보상)

제14조(잔존물)

제15조(대위권)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8조(양도)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1조(청약의 철회)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2조(계약의 해지)

제3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5조(보험료의 환급)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관할법원)

제38조(소멸시효)

제39조(약관의 해석)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2조(개인정보보호)

제43조(준거법)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도난·분실 보장제외 특별약관

확장수리보장 특별약관

확장수리보장 추가특별약관(배터리 위험보장)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재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단말기 대여 담보 특별약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특별약관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말합니다.
- 마. 지정서비스센터: 회사를 위해 피보험단말기의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바. 이동통신회사: 무선전화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 리퍼비쉬 제품: 단말기 일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품을 교체하여 재생산한 단말기를 말합니다.
- 아. 출고가: 통신서비스 유통채널에 통신사가 출고한 가격을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가액: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서 사고시점의 출고가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보상시점의 출고가)을 초과할 때에는 그 보상시점의 출고가를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이하 ‘피보험단말기’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아래의 물건은 피보험단말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밀수품이나 불법적인 운송 또는 거래과정에 있는 물건
  2.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복구나 교체, 탐색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해당 단말기 기종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
  3. 영구히 장착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용으로 장착된 장비, 제조시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4. 장식(보호)용 덮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배터리, 펜, 안테나, 메모리카드,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충전기나 USB케이블 등 보험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장비
  5. 수리, 교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지정서비스센터”나 “지정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물건
  6.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제반 수수료 및 요금

### 제4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단말기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전손사고
    - 가. 피보험단말기의 분실 또는 도난
    - 나. 피보험단말기의 파손(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된 경우
  2. 분손사고
    - 가. 피보험단말기의 파손으로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의 출고가 이하인 경우
-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전손사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분손사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수리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수리비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3항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대리인 포함합니다)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단말기 제작사의 보증프로그램이나 각종 수리보장프로그램(리콜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
3. 단말기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8.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 가. 단말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 나.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9.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물의 압류, 몰수 또는 파괴로 인한 손해
10.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 손실
11. 지연(보험회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한함),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시간손실, 이익상실, 단말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편들을 포함합니다)
12. 단말기의 노후화 또는 감가상각
13. 마모나 성능의 저하, 외래적 영향이 아닌 내재적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한 기기고장 및 단말기의 손상을 초래한 디자인상의 결함 또는 기타 품질상의 결함
14. 배터리 전원이거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기계적 손해 또는 장해
15.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앱다운로드에 따른 오류 등 보험목적물에 행해진 기타 작업
16. 회사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단말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의 손해. 단, 여기에서의 외관상의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 나.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17.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물을 위탁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18.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9.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
20.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21.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 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2. 보험증권에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
23. 파손사고에 대하여 회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수리한 경우
24. 피보험자가 발송된 보상단말기의 수령을 지체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피보험단말기에 사고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회사 또는 “지정서비스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등 소유권 확인을 위한 사항
  2.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3.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난, 분실 또는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 ② 피보험단말기에 도난, 분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신사’에 알려 이동전화서비스가 중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③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 회사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반드시 “지정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회사의 사고조사에 동의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단말기를 회사 또는 “지정서비스센터”에게 송부를 요청하고 장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영

수증 사본 등)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정서비스센터”에 교체 요청을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8조 제3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정한 사고횟수 제한, 사고당 보상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단, 전손사고로 보상을 받으시는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인 경우에 이 보험은 종료됩니다.
- ③ 전손사고의 경우, 물류 및 배송비용은 보험증권 상에 제공되는 보험가입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단, 물류 또는 배송건당 보험증권 상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류 및 배송비용은 자기부담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지정서비스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전손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모델의 보상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보상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파손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분손사고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에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합니다)하거나, 원제조사 이외의 유사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12조(보험금의 분담)

- ①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제13조(현물보상)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의 보상을 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잔존물)

- ① 회사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② 이 때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수리가 불가한 피보험단말기를 “지정서비스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지정서비스센터”가 부담합니다.
- ③ 손상된 피보험단말기가 교체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회사로 반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잔존물 미회수 부담금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④ 분실 또는 도난당한 피보험단말기가 회수되는 경우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15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8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

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32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5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3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2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 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의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기타 이해관계를 지니고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 회사, 법인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도난·분실 보장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확장수리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 다른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 제1조(보상하는 손해)

결함에 대한 보장은 피보험단말기 기기의 제품보증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당 증권의 보장기간의 말일에 종료됩니다(이하 “수리 보장 기간”이라 합니다). 이 증권상의 보험

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단말기를 선택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것입니다.

1. 수리 보장 기간 중 피보험단말기의 제품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목적물의 설치, 제거, 폐기 또는 가입하지 않는 단말기의 설치, 제거, 수리, 관리(액세서리, 부속물 또는 다른 기기 포함) 또는 목적물 외부의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망
2. 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 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
3. 변경, 훼손, 제거된 일련번호를 가진 목적물
4. 목적물과 동시에 구입한지 여부를 떠나, 액세서를 포함하여 피보험단말기가 아닌 기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
5.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기능상실, 소모, 손해 또는 내부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사용된 기기의 손해
6.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발생한 정부기관 등의 법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7.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바이러스 또는 담보기기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
8.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담보기기
9. 굽힘, 찌그러짐, 포트의 깨진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외형적인 손상
10. 담보기기의 예방보전
11. 담보기기가 서비스되는 동안 대체기기의 제공
12. 담보기기에 저장되거나 기록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13. 제조사의 보증에 의해 보장되거나 공지여부를 떠나 배송 등에 부과된 배송, 운반비용
14. 제품 리콜을 야기한 기계적인 결함
15. 전쟁 또는 각종 적대행위(침략, 모반, 반란, 폭동, 민란 등); 불법행위
16. 일반적인 소모, 마모 또는 점진적인 감소로 인한 기계적 결함
17.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게끔 설계된 보호막
18. 특별히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기술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은 손상 또는 담보기기의 통상적인 사용

##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조건은 이 특별약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동통신단말기보험 보통약관 혹은 특별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 확장수리보장 추가특별약관(배터리 위험보장)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확장수리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확장수리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터리의 기능상실
2. 배터리의 소모
3. 배터리의 손해

###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확장수리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포괄계약】**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정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동안 피보험단말기가 증가한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단말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단말기 정보, 단말기 개통일, 부가서비스 가입일(단말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아래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년간의 평균 피보험단말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단말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단말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서비스 가입

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위 제2호의 자료에 의하여 정산기간마다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하며 개별 피보험단말기에 대하여 월 단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를 보험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단말기의 보험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손(도난, 분실 등)이 발생하고 사고일과 보상기변일(계약자의 부가서비스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보통약관 제21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또는 부가서비스가입을 철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단말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합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가.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 ① 회사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②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제1항에 따른 개시일[부가서비스 가입자로 등록된 날의 익일(00)시(다만, 부가서비스 가입이후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또는 포괄계약 개시 이전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상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날과 부가서비스 최초 가입일로부터 (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이동통신서비

스가 해지(부가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시점부터 담보가 종료됩니다.

#### 제4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32조(계약의 해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부가서비스 포함) 해지에 따른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제5조(총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 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제6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제재 위반 보장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제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말기 대여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 소유의 단말기가 사전에 협의된 사업운영방법에 의거하여 대여된 경우,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사전에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대여되거나 반납된 경우
2. 사전에 정해진 대여 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한 손해
3. 대여 명의인 이외의 제3자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제3조(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소유의 단말기 중, 관련 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단말기로서 사전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식]

-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
-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 (금전적 손해 -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보상비율 90%일 때

- 금전적 손해가 200만원인 경우 : (100만원 - 10만원) x 90% = 81만원
- 금전적 손해가 80만원인 경우 : (80만원 - 10만원) x 90% = 63만원

- ③ 제1항의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 [용어해설]

- ① '사이버 금융범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1.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2.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3.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4.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②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③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5.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6.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7.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8.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9.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10.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1.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2.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13.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14.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15.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16. 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일자, 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과 보상비율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 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